

연구노트

- 공공부문 시간제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활용과의 연계방안

문미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김은지 ·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지원 방안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부문 시간제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활용과의 연계방안

문미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다루는 많은 문헌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요소로써 여성의 유급노동 진출,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내 성별분업의 변화와 돌봄의 공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노동시간 체제는 인구학적 변화와 노동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의 유연성,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용률 증대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시행과 맞벌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호 결합되어,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우 여성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외무고시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20%에서 60%로 3배 늘었고, 행정고시 행정·공안직은 23%에서 48%로, 기술직은 6%에서 22%로 올라갔다. 이러한 여성의 공직진출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성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일 가정양립지원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들이 공직 내 인적 구성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공직참여 증대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일 가정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는 조직 내의 세대교체에서도 기인된다. 회사 형 인간으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물러나고, 개인적인 삶과 자신의 성장, 자기계발, 그리고 개인적 생활의 만족을 더욱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자신의 경력개발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개념도 달리 보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였다면,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생활이 만족이나 일 이외의 시간을 고려하여 성공을 재정의 하고 있다(정영금, 2004: 99~100).

정부는 이처럼 인력구성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비롯한 각종 인사관리도 그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획일적인 인사관리 방식은 조직원들에게 수용되기 어렵고 정부 생산성으로도 연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바람직한 인사관리방식이며 꼭 필요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행 공직 내 근무시간 체제는 초과근무의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데다, 일과 가정



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제 노동, 노동시간단축, 유연근로시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여성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향후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성외벌이 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 전환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배규식 외, 2001). 이러한 근로시간 체제는 조직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가 어린 자녀나 노인, 환자 등의 가족을 가진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이다. 즉, 일 가정양립에 친화적이지 않다. 조직의 측면에서도, 여성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운영과 생산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의료와 육아시간 허가, 정부청사 신축 시 직장보육시설 확보, 재택근무제 도입(전자화촉진법률), 탄력근무시간제 도입(2005. 6), 시간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 근무 장소,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과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영위하고 일 가정양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로자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배귀희 외, 2001).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여러 형태 중 최근 행정기관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간제근무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제 근무자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근무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대상은 계약직공무원이었다. 현재는 시간제근무를 활성화시키고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근무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으며,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 시간제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비록 출산·육아 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는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 휴직자의 경력단절 등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맞벌이 공무원 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기존의 정규직 시간제전환 공무원제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지방자치단체 9곳을 포함한 20개 행정기관에 시범실시를 하였고, 2011년부터는 전 부처에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제근무 공무원 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나 정규직 시간전환 공무원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조직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근무 제도가 갖고 있는 일 가정양립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에 더욱 다가가고자, 시간제 근무자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두 제도간의 연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과 육아기에 처한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본인의 업무공백을 메꿔 줄 시간제 근무공무원 제도와 대체인력제도의 완벽성이 떨어져, 조직 운영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개인은 제도사용에 있어 불편한 상황에 처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정규직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두 제도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두 제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

계해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현재의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을 활용되는 데에 따른 일선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두 제도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개 공무원들에게는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용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제 근무자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대안으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내적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적합성 분석의 대상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정규직 전환시간제 공무원간의 수행업무의 내용 및 형태와 근로조건으로 할 것이며, 적합성의 측정은 시간분절 적합성, 책임수준 적합성, 역량수준 적합성, 근로조건 적합성의 4가지 요인으로 측정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조직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시간제근무제도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제도간의 연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배규식 외(2011).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정영금 (2004). "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5호.
- 배귀희 외(2011).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발전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저소득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김은지 ·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빈곤문제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 간의 밀착도는 점차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유자녀가구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가구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은지 외, 2010).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주요 사회위험이다(Taylor-Gooby, 2004; Bonoli, 2005). 한부모가족은 부모 양쪽이 수행하던 생계부양 및 자녀돌봄의 역할을 한명의 부모 또는 모가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족이 점차 표준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은 소득의 불안정성과 같은 전통적 사회위험에도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하나이다.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남녀 차이에 있어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25.1%로, 양부모가구 8.7%(1자녀의 경우)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지 외, 2011).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빈곤에 더하여 한부모가족은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돌봄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서비스 구매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정된 소득빈곤율은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노혜진 · 김교성, 2010).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낮은 급여수준과 급여근거의 모호성

이와 같이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급여는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동양육비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5만원씩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다.

〈표 1〉 2012년 아동양육비 지원

급여명		지급대상	지급내용	2012년 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비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국기초 수급자 제외) 만 12세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9,884	
	추가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84	2012년 신규사업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국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만 12세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5만원 (기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자는 추가 10만원 지급)	1,410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2005년 이후 급여액이 5만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다(김혜영 외, 2010; 김은지 외, 2011). 현금지원액이 낮은 액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역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법령상 급여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 상에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2: 126)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도 아동양육비의 목적이 빈곤가족에 대한 추가 생계비 지원인지, 적절한 아동양육의 질 보장인지, 아동돌봄에 대한 보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급여목적의 모호성에 더하여,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생계비 지급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 제도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¹⁾. 법률상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나, 이들 간의 개념구분 및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와의 혼동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검토가 필요하다.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생계비 지원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2)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태법인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예우등에 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한부모가족 특히 모자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복지수요에 비해 미흡하고, 배우자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그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과 같은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적합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 교육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로서의 ‘모자복지법’ 제정이 제기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8:1-2)

이에 따라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상의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아동양육비는 199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양육비는 초기 출발은 저소득모자가정의 3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과 해당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1일 분유80g(32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보건사회부, 1992:30,37).

〈표 2〉 아동양육비 지원현황(1992)

아동양육비	
목적	저소득모자가정 3세이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육토록 함과 동시,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대상	저소득모자가정의 보호대상범위는 '92년도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
내용	저소득모자가정의 3세이하 아동으로서 1일 분유 80g(320원)을 지원함.
지급방식	양육비는 지원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대상아동의 모에게 지급함.

출처 : 보건사회부(1992), 1992년도 부녀복지사업지침. p.30, 37

3세 이하 아동에 대해 1일 320원 수준으로 지급을 시작한 아동양육비는, 점차 지원연령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지원연령의 경우 1992년 3세 이하 아동에서 1994년 6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가 1999년 6세 미만 아동으로 축소되어 7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만6세 미만으로 한 연령(1세) 확대되어 2년을 유지하다가 2008년 만8세 미만, 2009년 만1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현재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320원 수준에서 시작되어 소폭의 상승을 거듭하다가 2004년 1인당 2만원으로 정책제로 변경되었다. 2005년 다시 5만원으로 상승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표 2〉 아동양육비 지원현황(1992)

년도	지원액	지원연령
1992	1일 분유 80g(320원), 월 9,600원 ²⁾	3세이하 아동
1993	1일 분유 80g(350원), 월 10,500원	3세이하 아동
1994	1일 분유 80g(400원), 월 12,000원	6세이하 아동
1995	1일 분유 80g(400원), 월 12,000원	6세이하 아동
1996	1일 분유 80g(400원), 월 12,000원	6세이하 아동
1997	1일 분유 80g(500원), 월 15,000원	6세이하 아동
1998	1인당 1일 525원(분유 80g상당), 월 15,750원	6세이하 아동
1999	1인당 1일 525원, 월 15,750원	6세미만 아동
2000	1인당 1일 541원, 월 16,230원	6세미만 아동
2001	1인당 1일 541원, 월 16,230원	6세미만 아동
2002	1인당 1일 568원, 월 17,040원	6세미만 아동
2003	1인당 1일 568원, 월 17,040원	6세미만 아동
2004	1인당 월 20,000원	6세미만 아동
2005	1인당 월 50,000원	6세미만 아동
2006	1인당 월 50,000원	만6세미만 아동
2007	1인당 월 50,000원	만6세미만 아동
2008	1인당 월 50,000원	만8세미만 아동
2009	1인당 월 50,000원	만10세미만 아동

자료 : 1992-1994년- 보건사회부(각년도), 부녀복지사업지침; 1995-1996년- 보건복지부(각년도), 부녀복지사업지침; 1997-2002년- 보건복지부(각년도), 여성복지사업지침; 2003-2004년- 보건복지부(각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5-2007년- 여성가족부(각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8년-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모색

이와 같이 아동양육비는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분유값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양육비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는 가구유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사실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급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생계비 지급 조항이 의무 규정화되면서 아동양육비, 생계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는 그동안 임의규정인 상태에서 아동양육비만 지급되어

2) 1992년에서 2003년까지의 1인당 월 지원액은 지침상 표기된 분유값*30일로 계산한 값



왔으나 이제는 아동양육비와 생계비 모두 의무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 이들 간의 관련성 등이 짝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간의 관련성 등도 짝어져야 한다. 결국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생계지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비, 양육비지원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장기·단기적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noli, G.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3): 431-449.
- Taylor-Gooby, P.(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정책지원 방안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연구의 필요성

2010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1,000명당 강간 및 강간미수 등 성폭력 피해자가 2007년 2.2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2.3배 증가되었다. 심각한 성추행(강제추행 등)피해자는 2007년 4.7명에서 2010년 20.6명으로 4배 이상 증가되었다. 특히 음란전화 및 e메일 등의 피해자는 2007년 19.2명에서 2010년 271.1명으로 14배나 증가되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성폭력사건으로 더더욱 여성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성인 여성의 36.5%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그 당시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심한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수치심, 혼란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가 야기되며 자살시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문제와 연계될 수 있어 치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권해수 외, 2011).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연구가 부재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 표출 양상과 치유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낮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근거중심의 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회복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속적이고,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제도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인기에도 정신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Erica L. Weiss, etc 1999). 또한 성인기의 피해 경험은 사회적 위치 및 환경에 따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계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의 스트레스(대인 관계 등)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전체 여성과 비교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의 우울감(CES-D 활용) 및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를 포함하고 있어 장애유형별 정신건강 수준 및 장애자와 비장애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분석 한다.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임상의학적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시설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연구 추진방법

본 연구의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기간 동안 성폭력 상담소(전국 152 개소) 방문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전국 19 개소)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400-500명)한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5세-64세로 제한을 두고 조사 대상자 중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기존 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의 정신건강 관련 설문 내용을 본 설문조사의 설문내용을 일치시켜(우울증 척도인 CES-D, 스트레스 수준,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등)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폭력 유형, 지속기간, 피해 연령 및 횟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연령, 학력수준, 소득, 직업 등)을 보정하고 성폭력 유형, 지속기간, 피해 연령 및 횟수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한다. 임상의학적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15-20명)의 정신건강상태와 정신심리 증상의 표출 양상을 파악하고 정신심리적인 치유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써 향후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성폭력시설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실시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의 담당자 및 전문가(10-15명)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연구 기대효과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해수 외(2011). 성폭력 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용역 연구사업.
- Erica L. Weiss, etc. 1999. Childhood Sexual Abuse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Women: Psychosocial and Neurobiological Correlates. *Am J Psychiatry* 156:816-828.
- 2010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용역연구사업 .